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임 감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70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25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67호)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66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0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7
1. 내항 여객운송사업·도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 마련 (정점식의원안 제26조제2항)	7
2. 경로당 급식 및 체육·문화 사업 관련 지원 확대 (한병도의원안 제37조의2 등)	13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의 종사자 포함 (이수진의원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1)	23
4. 운임 감면 운송사업자에 지원 근거조항 마련 (이현승의원안 제26조제2항)	29
5. 노인 격리 및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김예지의원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35
※ 참고자료	47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현황	47
2.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면허등록자 및 활동자 현황	48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및 억제대 사용 현황	49

I. 개요

1.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26.
- (3) 회 부 일 : 2024.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2.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19.
- (3) 회 부 일 : 2024. 8.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3.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9. 23.
- (3) 회 부 일 : 2024. 9.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4.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30.
-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5.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5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
- (3) 회 부 일 : 2024.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내항 여객운송사업·도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 마련 (정점식의원안 제26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u><신설></u>	제26조(경로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

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²⁾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서 철도와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시설의 종류	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 1)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선박이용 운임·요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음.

내항 여객운송사업은 상대적으로 긴 거리(예: 제주-부산)로 「해운법」이 적용되며, 도선사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적용

- 다만, 「해운법」(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도서 주민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이들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항 여객선운임보조사업을 통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의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의 경우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 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³⁾.

< 도서민 선박 운임 비용 지원 규정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8,340원 초과 30,000원 이하 운임에 대해서는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3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 운임에 대해서는 자부담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00원 초과 운임에 대해서는 7,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총 516억원(연평균 10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음.

< 내항 여객운송사업·도선사업에 대한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명, 원,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일반지역 노인 이용자 수	1,063,848	1,038,978	1,014,690	990,970	967,804	—	—
	도서민 노인 이용자 수 (기 지원 지역 제외)	242,051	236,393	230,866	225,469	220,199	—	—
지원자 수(명)(A)		1,305,899	1,275,371	1,245,556	1,216,439	1,188,003	—	—
지원 단가(원)(B)		7,644	7,957	8,283	8,622	8,975	—	—
추가재정소요(억원) (A×B)		100	101	103	105	107	516	10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해운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근거로 도서 주민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운임의 일부를 지원 중이고, 개념상 ‘수송시설’에 포함되는 ‘선박’에 관한 사항만 별도 분리·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2. 경로당 급식 및 체육·문화 사업 관련 지원 확대(한병도의원안 제37조의2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연료비·인건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체육·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 ----- ----- <u>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의 구입비</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노인을 위한 취사에 소요되는 연료비와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u><신설></u>	<u>제37조의4(경로당에 대한 여가활동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u>

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체육·문화 활동 등 여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2024년 4월말 기준, 전국 총 68,658개가 있음.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친목도모 외에 식사서비스,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해 이용하는 비율이 2017년(복수응답)에 비해 2020년(복수응답)에 증가하였고, 단일응답으로 진행된 2023년에도 각각 19.2%, 3.4%, 4.6%로 조사되었음.

< 독거노인 비율과 경로당 이용 이유 >

(단위: %)

연도	독거노인 비율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19.0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19.8	82.9	62.5	19.0	11.0	2.3	1.6	1.3	0.2
2023	21.8	66.2	19.2	3.4	4.6	0.4	1.0	0.9	4.3

* 2017·2020년은 복수응답, 2023년은 단일응답

* 자료: 「장래인구추계」, 「노인 실태조사」

- 경로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 수준임.

< 2024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194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41.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8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자료: 보건복지부

- 경로당 이용 이유에서 식사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원부족으로 2020년 기준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66,843개소 중 28,041개소(42.0%)이고, 급식인력이 지원되는 곳은 15,037개소(22.5%)에 불과함.

< 경로당 식사 제공 및 지원인력 유무(2020) >

(조사기간: 2020.8.29~2020.9.29. / 단위: 개소, %)

경로당	식사 제공		
		주5회 이상	급식인력 지원
66,843	28,041 (42.0%)	7,745 (11.6%)	15,037 (22.5%)

* 자료: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이화여대산학협력단, 2020.

-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로당 68,658개 중 58,558개(85.3%)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2020년보다 개선되었으나, 평균 주 3.4회 식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 간에 격차가 큰 것(2.9회~4.4회)으로 확인되었음.

< 지역별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

(기준: 2024. 4. 30. / 단위: 개소, 회)

시 도	경로당 수	식사 제공중인 경로당 수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합계	68,658	58,558	3.4
서울특별시	3,609	3,090	3.3
부산광역시	2,403	2,152	3.3
대구광역시	1,809	1,318	3.3
인천광역시	1,555	1,341	3.7
광주광역시	1,380	1,291	3.6
대전광역시	850	814	3.0
울산광역시	836	695	3.0
세종특별자치시	517	498	3.2
경기도	10,020	8,391	3.1
강원특별자치도	3,319	2,443	3.2
충청북도	4,262	3,553	4.4
충청남도	5,924	5,414	2.9
전북특별자치도	6,860	5,536	3.6
전라남도	9,211	8,166	3.6
경상북도	8,055	7,685	3.1
경상남도	7,575	5,929	3.8
제주특별자치도	473	242	3.9

*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냉방비-난방비-양곡구입비 간에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절감한 경우 그 절감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 현황(2021~2023)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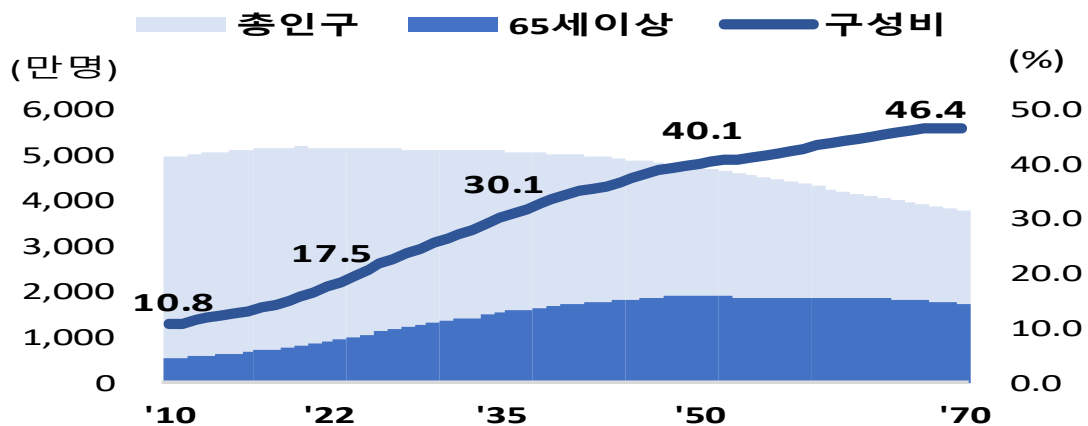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				(%)				(%)
금액	342	280	62	(18%)	724	614	110	(15%)	763	704	60	(8%)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같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연료비,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에 대한 여가활동 비용을 보전할 경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로당 이용 노인이 증가함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 6월 기준, 5만 6,000명의 노인일자리가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2만 6,000명을 추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인건비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아울러,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있어야 하겠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건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0호),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1호) 등 16건 중 11건이 부식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급식 확대 및 체육·문화활동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로당 부식비, 연료비, 인건비 및 여가활동 비용 등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2005년~)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타 법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 발생하므로 관계부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타 지방이양사업 간의 형평성,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2024.11.5.)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급식 확대 및 체육문화활동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 지방재정 경감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국고 지원 중 *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4년 800억원)는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으로 통합사용 가능 ◦ 경로당의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은 지방이양사업(05년~)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보조금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 발생하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제81호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 제82호 경로당 활성화 지원 - 또한, 타 지방이양사업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정부는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 * 기재부 내부 수요조사(8월4주, 예산기준과) → 부처 의견조치 및 입법예고(9월) → 시행령 개정(10월) ※ (개정안)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경로당 운영(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 ◦ 경로당 체육문화 등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기존 프로그램 및 자원과 연계 확대가 바람직함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 경로당중앙지원본부(4억원), 시도별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 24억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순회프로그램관리자, 369명)을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	◦ 경로당 운영은 '05년 재원(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과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다시 국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 취지 등에 역행 - 경로당은 입지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운영방식 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노인의 건강에 직결된 필수적인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19년부터 정부안에 반영해서 지원 - 기재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시행령」 개정 (2024.11.5.)
행정안전부	◦ 국가시책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 이미 국고보조하고 있는 양곡비와 달리 국비를 미지원하고 있는 부식비에 대해서도 최소 양곡비 수준(보조율 50% 서울20%) 이상의 국고보조가 필요함. ※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제81호 삭제가 필요함.
대전시	◦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하던 냉방비·난방비·양곡비 이외에도 가스비·식재료비·식사도우미 인건비 등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 비용 지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경상북도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인건비 직접 지원 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노인회	◦ 노인권의 신장 및 복지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의 종사자 포함

(이수진의원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1)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1. <u>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u>	1. ----- <u>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u>
2. ~ 16. (생략)	2.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 제39조의6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등 다른 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종사자 중 ‘의료인’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히 간호조무사는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게 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 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5)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⁶⁾ 아닌 업무종사자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영양사, 감염관리 업

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6)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무 수행자, 보안전담인력,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있음.

<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아닌 업무 종사자 현황 >

의료인이 아닌 업무 종사자		근거규정	비 고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료유사업자 (접골사·침사·구사)		「의료법」 제81조	
안마사		「의료법」 제82조	
보안전담인력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약사, 한약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사회복지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2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영양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료기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12호에 따른 신고의무대상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감염관리 업무 수행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병원행정사, 미화직원, 보안직원, 이송직원 등		—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중 의료기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12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⁷⁾에 따른 의료기사)에 따라 신고 의무자이나,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은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다른 시설 종사자와 달리 신고의무자가 아님.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경우,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라도 청소 등 학대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종사자는 제외하고,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포 후 일정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어 확대되는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도 있음.

□ 그 외,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진료소⁸⁾’의 의료인력과 종사자(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8) 보건소·보건의료원 등은 「지역보건법」상 「의료법」 특례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해석할 수 없음.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신고의무자 포함’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학대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청소·식사 담당 직원 등 학대 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4. 운임 감면 운송사업자에 지원 근거조항 마련(이헌승의원안 제26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u><신설></u> 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경로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¹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서 철도와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시설의 종류	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로 노인의 무임승차 인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철도수송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 9)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0)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 65세 이상 인구 및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인원 추이 >

(단위: 천명, 배)

구 분	2021	2022	2023
65세 이상 인구(A)	8,570	8,981	9,436
노인 무임승차 인원(B)	315,423	369,082	417,289
B/A	36.8	41.1	44.2

* 주: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중복 이용자를 제거하지 않은 수치로 연간 이용 횟수와 동일 의미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공표통계)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2023 철도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11) 등에 따라 KTX 등의 철도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이며, 2024년 2,296억 9,100만원임), 도시철도12)(지하철)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등에 관련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철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인제공자로서 국가가 도시철도 운송사업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과 함께, 상기한바 현행의 철도 지원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익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역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12)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량전철(주), 용인 경량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남서울경전철(주)

법체계를 고려하여 「도시철도법」 등을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음.

□ 개정안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총 4조 3,040억원(연평균 8,6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됨.

< 도시철도에 대한 노인 운임 감면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천명, 원,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노인 무임승차 인원 (A, 천명)	499,213	541,801	576,753	613,860	643,775	-	-
노인 1인당 무임승차 단가 (B, 원)	1,470	1,485	1,497	1,508	1,517	-	-
추가재정소요 (A × B, 억원)	7,338	8,043	8,634	9,256	9,768	43,040	8,60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상당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것인바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운송사업의 법적 근거인 「철도산업발전법」에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규율된 점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법」 등에 관련 규정을 규율하는 법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

보건 복지부	◦ 상당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것인바, 관련부처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도시철도법」 규정상 도시철도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자체 장에게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는 점, 도시철도 미운영 지역 주민과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 국비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운송사업의 법적 근거인 「철도산업발전법」에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규율된 점 토대로 「도시철도법」 등에 관련 규정을 규율하는 법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 재정부	◦ 지자체 시설인 도시철도 운임 결정 및 무임승차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지자체 재량 판단사항이므로 비용도 지자체 부담 필요 ※ 국가철도는 무임수송 국비 지원 중 ◦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PSO 국비 지원은 지역간 형평성 저해 ◦ 이를 감안, 현재 국가는 지자체 무임 수송 대신 안전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국토 교통부	◦ 도시철도는 지자체 시설로, 운임 감면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등 운영기관 지원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함.

5. 노인 격리 및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김예지의원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및 제55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금지 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u><신설></u>	제39조의9(금지 행위) ----- ----- ----- ----- ----- ----.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55조의3(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u>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 ② · ③ (생략)	2. ----- -----<u>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7호</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 방지, 의료장치 유지 목적(L-Tube, 소변줄, 비위관 등), 신체 가려움으로 인한 피부 손상 예방, 대변 만짐 등 비위생 행동 방지,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 예방(손목억제대, 손장갑, 휠체어 안전벨트, 침대사이드레일 등)을 위하여 2024년 6월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6,291개소 중 1,859개소가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현황 >

(기준: 2024. 6. 30./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시설	5,543	5,762	5,988	6,150	6,269	6,291
사용 시설	1,212	1,325	1,434	1,566	1,755	1,859

* 자료: 보건복지부

* '사용 시설수'는 1회 이상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시설, 지자체 취합

- 그리고, 2023년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37건 중 '장시간 신체억제대 사용' 등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신체적 학대로 판정된 것은 57건임.

< 노인학대 발생장소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정 내	4,616 (89.0)	4,450 (84.9)	5,505 (88.0)	5,962 (88.0)	5,867 (86.2)	6,079 (86.5)
생활복지시설	380 (7.3)	486 (9.3)	521 (8.3)	536 (7.9)	662 (9.7)	571 (8.1)
의료복지시설	321 (6.2)	432 (8.2)	483 (7.7)	497 (7.3)	579 (8.5)	537 (7.6)
주거복지시설	59 (1.1)	54 (1.0)	38 (0.6)	39 (0.6)	83 (1.2)	34 (0.5)

이용시설	41 (0.8)	131 (2.5)	92 (1.5)	87 (1.3)	52 (0.8)	108 (1.5)
병원	65 (1.3)	45 (0.9)	37 (0.6)	62 (0.9)	86 (1.3)	115 (1.6)
공공장소	42 (0.8)	60 (1.1)	39 (0.6)	54 (0.8)	51 (0.7)	64 (0.9)
기타	44 (0.8)	71 (1.4)	65 (1.0)	73 (1.1)	89 (1.3)	88 (1.3)
합 계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 현황 >

(단위 : 건)

학대 판정지표	세부지표	학대로 판정된 건수				
		2019	2020	2021	2022	2023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	36	54	44	80	39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9	11	12	13	16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	5	2	2	20	2
계		50	67	58	113	57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벨트, 조끼, 장갑 등)를 사용한다,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 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 전신 억제대를 사용한다,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한다 등

□ 참고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입소 정원 10명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이 있음.

< 2023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 명)

구 분	시설	입소자	
		정원	현원
노인요양시설	4,525	218,778	166,73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14	15,716	12,795
합 계	6,139	234,494	179,526

* 자료: 「2023년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¹³⁾”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2014.8.28.)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¹⁴⁾”(2022.8.2.)를 한 바 있음.
- 보건복지부도 법률 형식은 아니지만, 201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¹⁵⁾에 근거를 마련한

13)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간 등 돌봄인력 부족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도 함께 권고하였음.

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시행 2014.7.1.)

바 있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¹⁶⁾.

□ 개정안과 같이 「노인복지법」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 금지와 벌칙 부과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노인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입법례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 및 제75조) 및 「의료법」(제36조제12호)이 있음.

< 신체적 제한 관련 입법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용 및 가혹 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16)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는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의 처방은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 [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은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한편, 개정안은 노인학대 문제는 전사회적인 이슈로서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같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 격리 및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첫째, 법 내용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보호·안전과 시설 종사자의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함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체억제대 사용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사전에 전문의의 판단과 함께 노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개정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전문의의 판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이 추가된 규정을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1명 이상(입소

자 30명 이상 1명 이상,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1명) 두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의사 또는 계약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그리고 일반 가정 등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어야 하는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1명 이상: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 1명: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1명 이상: 입소자 30명 이상 양로시설

- 둘째, 법 체계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격리나 묶는 등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시설의 소극적 돌봄경향, 소송 등 법률 분쟁 발생 등 현장에서의 혼란도 우려된다는 의견(보건복지부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현행 「노인복지법」(제39조의9)에서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 6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39조의9)상 금지행위 >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금지행위 제1호 중 상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제외하고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격리 또는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를 폭행 등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금지행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음.

□ 참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신체 제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보호 및 안전 목적상 신체를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상

황이 존재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격리나 묶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모호하여 현장 혼란도 우려된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기관 등 입장 >

보건 복지부	-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신체 제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실적으로 노인 보호 및 안전 목적상 신체를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낙상방지, 의료장치 유지, 피부손상 예방 등)이 존재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① 의료기관 입원환자 안전을 위하여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9조의7), ②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가 있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격리나 묶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모호, 현장 혼란도 우려 - 시설의 소극적 돌봄 경향, 소송 등 법률 분쟁 다수 발생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치매 등 수급자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위험 발생 시 제한적 허용 필요 - 추후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제한 사용 기준' 마련 필요 ※ (참고 규정) ① (의료법)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구체적인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 ②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라 일부 허용 등
한국노인 장기요양 기관협회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 예외적¹⁾으로 신체적 제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²⁾ 발생 * (1) 낙상 예방 및 감염병 환자 일시 격리 등, (2) 소송 등 법률 분쟁 다수 발생 - "수급자 보호 또는 요양보호사 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필요

문 의 처
02)6788-5499

【참고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	--------------------------------------

구 분	인원 수 (명)
계	2,036,50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568,05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355,69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8,77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458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6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617,52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13,89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1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7,13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308,004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3,344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95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43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요원	20,883

【참고2】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면허등록자 및 활동자 현황 (보건복지부)

(2024. 6월말 기준 / 단위: 명)

연 번	관계 법령	직종		면허 등록자1)	활동인력						
					계	의료 기관 2)	보건기관3)				약국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 진료소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계		2,551,164	906,389	856,476	631	6,763	4,808	1,863	35,848
1	의료법	의료인	의 사	140,459	114,104	112,901	138	538	527	-	-
2			치과의사	35,034	28,923	28,428	34	256	205	-	-
3			한의사	28,945	23,535	22,613	22	240	660	-	-
4			간호사	526,622	277,263	271,843	218	2,653	695	1,852	2
5			조산사	8,098	61	60	-	1	-	-	-
6			간호조무사	901,310	223,126	220,247	76	1,082	1,711	10	-
7	약사법	약사		78,463	42,118	7,054	6	17	1	-	35,040
8		한약사		3,264	1,394	589	-	-	-	-	805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 기사	임상병리사	73,159	29,484	28,710	40	689	45	-	-
10			방사선사	56,588	33,476	32,962	43	433	38	-	-
11			물리치료사	93,263	50,800	50,174	20	362	244	-	-
12			작업치료사	27,451	9,149	9,141	-	2	6	-	-
13			치과기공사	39,504	3,011	3,009	-	2	-	-	-
14			치과위생사	106,254	48,953	47,827	23	433	669	1	-
1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3,043	5,674	5,653	7	12	1	-	1
16		안경사		49,901	2,438	2,437	-	1	-	-	-
17	공중위생 관리법	위생사		110,553	-	-	-	-	-	-	-
18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사		175,910	8,677	8,625	4	42	6	-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1급) 26,778 (2급) 23,318	4,203	4,203	-	-	-	-	-
20	국민건강 증진법	보건교육사4)		13,247	0	-	-	-	-	-	-

1)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함

*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3) 「지역보건법」의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신고한 현황)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 「의료기사법」의 의료기사, 응급의료법의 응급구조사, 119법에 따른 119구급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신고의무자에 이미 포함. 단, 「의료기사법」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응급구조사는 다수가 소방청(119구급대원 포함), 민간이송업체(구급차 이송업)에 근무

【참고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및 억제대 사용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	---

구분	내용
일본 (신체구속제로 가이드라인)	◦ 고령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 구속이나 기타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신체억제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
미국 (너싱홈개혁법)	◦ 억제대는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최소 침해의 원칙하에 시행 -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 목표로 한 제도적 장치인 NHRA(너싱홈개혁법)를 통해 규제를 시행함
영국 (본인의사에 의해 허용)	◦ 본인의 의사에 의한 신체억제를 허용함 - 수용 가능한 억제 : 시설 입소노인이 보다 안전한 느낌을 갖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능 - 수용 불가능한 억제 :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거나 몸을 구속하는 것
네덜란드 (신체억제대안)	◦ 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국립 장기요양전문센터를 통해 86개의 신체억제의 대안(Bundle of alternatives for more freedom in healthcare)을 제시
유럽 평의회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안)	◦ 본인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하며,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만 시행
WHO 정신보건, 인권에 관한 자료집	◦ 격리와 강박이 정신질환자 자신과 환자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위협을 방지할 유일한 수단일 때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음.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 협약	◦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 활용